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13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 박주민·김남희·박홍배

이용우 • 민병덕 • 김남근

이강일 · 송재봉 · 전용기

황운하 • 안호영 • 박홍근

의원(12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감시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함.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문제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

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 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안 제3조).
- 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하되, 임기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안 제9조).
- 마.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다른

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서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 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며, 소환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및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증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서명요청 활동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

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한 후 소명요지와 소명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 차.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대 상자의 해당 지역구 국민소환투표권자로 하고, 다른지역 지역구국 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 권자 가운데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하되, 선정 방법·시기·통 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8조).
- 카.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 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 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타.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

- 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 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해당 국회의원의 직은 정지되고,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며,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3조).
- 하.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 (안 제32조).
- 거.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 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너.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소환추진위원회의 운영, 소환발의 서명요청 활동과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

조).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소환"이란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직접 해임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민소환투표"란 국민소환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투표를 말한다.
 - 3. "국민소환투표권자"란 제3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국민소환투표대상자"란 이 법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을 말한다.
 - 5. "국민소환투표운동"이란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나. 국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 제3조(국민소환투표권) ①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다.
 - ②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4조(소환사유)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될 수 있다.
 -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소환대상의 제외) ① 국회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남은 임기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국회의원은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국민소환의 대상이되지 아니한다.
- 제6조(소환절차의 종료) ① 국회의원은 이 법에 따른 소환절차의 종료이전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원이 사직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소환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소환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제17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인명 부 작성 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에 따른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 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의2까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 제8조(국민소환투표의 보장 및 홍보·계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소환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국민소환투표 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 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 · 도화 · 시설물 · 신문 ·

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참여·투표 방법, 그 밖에 국민 소환투표에 필요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선거관리"는 "국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2장 국민소화투표의 청구 등

- 제10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날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 1.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 2.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모든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 ②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임기만료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기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환사유를 서면에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청구할수있다.
- ③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는 수에서,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과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받은 서명의 수가 소환에 필요한 서명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총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날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소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신고) ①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 회(이하 "소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구성원 (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 1.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
 - 2.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②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
 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환발의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 1.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하 "인 적사항"이라 한다)
 - 2.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직위·성명 및 주소
 - 3.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취지 및 이유 등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추가·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원회가 대표자등을 신고(추가・

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그 대표자등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소환발의 서명요청 활동) ① 소환추진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소환발의를 위한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명이 제한 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만이 할 수 있다.
 - ③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거나 패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국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13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은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 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 1.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국민소환투표의 취지나이유를 설명하는 행위
-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3. 서명요청을 위하여 해당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구의 읍・면・동(비례대표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한다)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4.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서명요청을 하는 행위
- 5.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 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행위. 이 경우 자동차를 이용 할 수 없다.
- 6.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서명요청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제14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환 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1. 국민소화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아닌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서명
 -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 진 서명
 -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 7. 강요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서명
- 8.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반되는 서명
- ③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있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10조에 따른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국민소환투표 청구의 각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 원회의 대표자가 제출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제외 대상기간에 청구한 경우
- 2. 제14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경우
-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4.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15조제6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 건에 미달되는 경우

제3장 국민소환투표의 발의 및 실시 등

- 제17조(국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국 민소환투표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국민소환투표대 상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9조제2 항에 따른 소명요지와 소명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 다)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 제18조(국민소환투표인 등) ①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권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권자(이하 "국민소환투표 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1.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 해당 지역구 국민소환투표권자
 - 2.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국민소환투표권자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경우 해당 지역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소환투표권자와 그렇지 않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비율을 같게 한다)
 - 3. 비례대표국회의원: 국민소환투표권자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사람
 - ②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로 하고,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인의 선정 방법·시기·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 국민소환투표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 제21조(국민소환투표의 형식)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 제23조(국민소환투표의 방법 등) ① 국민소환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 ③ 국민소환투표 및 개표 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④ 국민소환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

- 투표안의 내용,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국민소환투표의 절차 등을 게재한 국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작성방법·배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공직선거법」을 준용함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르고, 국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보궐선거등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4장 국민소환투표운동

- 제26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 제27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9조·제79조·제82조(제82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의4에 따른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

-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국민소환투표 대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은 각각 "국민소환투표 한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 제28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 제29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제27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국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민소환투표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1. 「공직선거법」 제80조에서 제한한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하는 행위
 -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 제한한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민소

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제한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 4. 「공직선거법」 제102조에서 제한한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5.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제한한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6. 국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③ 지위를 이용한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 제30조(위법한 국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따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5장 국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31조(권한행사의 정지 등) ①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해당 국회의원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

- 고한 때부터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국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 제32조(국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 ①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국민소환투표 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국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국회의원은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없다.
- 제34조(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 ①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있다.

- ②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5장(선거에 관한 쟁송) 중 국 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보궐선거 실시의 제한 등) ① 제34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 국민소환투표의 무효가 결정되어 재투표가 실시 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투표 및 보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 중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국민소환투표의 비용 부담) ① 국민소환투표의 사무에 필요한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비용은 제외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의 준비 · 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 2.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 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 3.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
 - 4. 국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 한 경비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비용을 국민소환투표안 발의

- 일부터 5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비용의 산출기준·지급절차·지급방법·집행·회계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7조(후원회) 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후원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기부금품은 소환추진위원회의 운영, 소환 발의 서명요청 활동과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 다.
 - ③ 그 밖에 후원회의 등록·해산과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8조(동행요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국민소환투표 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동행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벌칙

- 제39조(벌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 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국민소환투표 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 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 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 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3.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 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사람
 - 5. 국민소환투표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

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 6.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국민소환투표지를 제거・변 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
- 7.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 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 8.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국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사람
- 9.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 하여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 무를 유기한 사람
-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 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국민소환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
 -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

게 한 사람

- ②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 2. 제2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민소환투표 운동정보를 전송한 사람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사람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국민소 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 3. 제29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 제43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사람

-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제44조(이익의 몰수 등)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 제45조(과태료) ① 제38조 단서를 위반하여 동행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 출의 의무를 해태한 사람
 -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 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貼付)한 국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 오손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아니면서 서명요청 활동을 한 사람
-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패용하지 아니하고 서명요청 활동을 한 사람
- 3. 국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국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 거나 해태한 사람
- 4.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 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